

「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1년 11월 16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21년 11월 25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72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
(2021년 12월 16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기획실장)

가. 제안이유

2022년 1월 13일부터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안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「지방자치법」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 중 변경되는 내용과 불일치하는 인용조문을 각각 일괄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불일치 인용조문 변경 : 28건
「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 등 조례 26건
- 변경되는 위임내용 반영 : 1건
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주민의 수 및 요건 완화에 따른
「평창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」의 내용 변경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현진)

○ 본 조례안은

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'22년 1월 13일 전면 시행됨에 따라
인용조문 및 위임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개정 주요내용으로는

「평창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」 청구인 요건과 나이를
200명 이상의 연서에서 150명 이상의 연서로,
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
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부.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른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

제1조(「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제116조의2”를 “제130조”로 하고, 제3조제2항 제2호 중 “제9조제2항”을 “제13조제2항”으로 하며,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 제4호 중 “제116조의2제2항”을 “제130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평창군 국내·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국내·외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 중 “제39조”를 “제47조”로 한다.

제3조(「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제1호 중 “제134조제1항”을 “제150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4조(「평창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및 제2조 중 “제16조제1항”을 “제21조제1항”으로 하고, 제2조 중 “19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200명 이상”을 “18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평창군조례·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조례·규칙등 공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및 제7조 중 “제26조제6항”을 “제32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, 제3조제2항 및 제6조제4항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”를 “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7조(「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12조부터 제120조”를 “제125조부터 제134조”로 하고, 제7조 제1항 중 “제113조”를 “제126조”로 하며, 제14조제1항 중 “제114조”를 “제127조”로 하고, 제17조제1항 중 “제4조제3항·제6항”을 삭제하며, 제20조제1항 중 “제115조”를 “제128조”로 한다.

제8조(「평창군 반 설치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4조의2제5항”을 “제7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9조(「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및 제2조제2항 중 “제4조의2제4항”을 “제7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10조(「평창군 읍·면·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읍·면·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4조의2”를 “제7조”로 한다.

제11조(「평창군 읍·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읍·

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6조”를 “제9조”로 한다.

제12조(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사무의 민간
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04조제3항”을 “제117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13조(「평창군 사무위임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
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04조”를 “제117조”으로 한다.

제14조(「평창군 주민투표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
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중 “제4조의2제4항”을 “제7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15조(「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명예군민증서
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제13조제1항”을 “제17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6조(「평창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
평창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
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제90조”를 “제102조”로 한다.

제17조(「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
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제142조”를 “제159조”로 한다.

제18조(「평창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, 제2조 및 제9조제2항 중 “제134조제1항”을 “제150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9조(「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작은도서관 설치·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제104조”를 “제117조”로 한다.

제20조(「평창군 체육진흥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“제142조”를 “제159조”로 한다.

제21조(「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9조”를 “제13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2조(「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04조 및 제144조”를 “제117조 및 제161조”로 한다.

제23조(「평창군 군계획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 중 “제124조”를 “제139조”로 한다.

제24조(「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

운용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장기 미집행 군 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특별 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제126조제2항”을 “제141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25조(「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제12조”를 “제16조”로 한다.

제26조(「평창군 한약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한 약 유통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제104조제3항”을 “제117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27조(「평창군 수도급수 조례」의 개정)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36조, 같은 법 제139조제1항”을 “제153조, 제156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